

의안번호	2212978
의 퇴 인	이성윤 의원
회 답 일	2025. 9.16.
추 계 번호	25F4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등의 100%, 이후 2년간 법인세 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30.12.31. - 감면한도: ①+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500만 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일정한 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 원
2	안 제121조의37 신설 (전북 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전북투자진흥지구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등의 100%, 이후 2년간 법인세 등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① 전북투자진흥지구 2030.12.31.까지 입주한 기업 ② 전북자유무역지역 2028.12.31.까지 입주한 기업 - 감면한도: ①+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500만 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일정한 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 원
3	안 제121조의38 신설 (전북 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	전북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제121조의3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은 감면 배제 및 감면세액 등을 추정
4	안 제127조 추가 (중복지원 배제)	안 제121조의 36 및 안 제121조의37 신설 규정을 제4항 및 제5항에 추가하여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추가
5	안 제128조 추가 (추계 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안 제121조의 36 및 안 제121조의37 신설 규정을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추가하여 결정·경정 또는 의무불이행에 따라 감면 배제 대상에 추가
6	안 제132조 추가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안 제121조의 36 및 안 제121조의37 신설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 최저한세 제외 대상에 추가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1조의37 신설 (전북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3	안 제121조의38 신설 (전북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	
4	안 제127조 추가 (중복지원 배제)	
5	안 제128조 추가 (추계 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6	안 제132조 추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 상세 사유

□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77조¹⁾에 따라 지정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지식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고자 함
 - 감면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30.12.31.까지
 - 감면한도: ①+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500만 원*

* 청년 상시근로자와 일정한 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 원

□ 전북투자진흥지구 또는 전북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839호, 2023.12.26., 전부개정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전북특별법 제73조²⁾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³⁾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고자 함
 - 감면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① 전북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030.12.31.까지 입주한 기업
 ② 전북자유무역지역의 경우 2028.12.31.까지 입주한 기업
 - 감면한도: ①+②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500만 원*
- * 청년 상시근로자와 일정한 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 원

[표 1]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투자금액 및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지정업종

투자금액	상시근로자	업종
3억 원 이상	5명 이상	연구개발업
5억 원 이상	8명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10억 원 이상	15명 이상	레도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방위사업,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공우주산업,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호텔업·수산물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테마파크업, 관광식당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전북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839호, 2023.12.26., 전부개정] 제7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에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9호, 2025.1.21., 일부개정]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전북자치도의 「전북경제포털」 누리집에서 지구·특구·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현재 14개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2개의 후보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는 2025년 하반기 지정 예정

[표 2] 전북특별자치도 지구·특구·단지 현황: 2025년

지정 현황	지구·특구·단지	특징
예정	연구산업 진흥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예정	연구산업 진흥단지(새만금)	새만금지역을 신성장동력 산업 및 연구시설의 집적지로 개발
예정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새만금지역에 고령친화산업 주요인프라 조성
예정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무인이동체 사업(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농기계 등)과 연계하여 설계 부터 제작 및 평가, 인증까지 사업화의 전단계를 수행
예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40MW이상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그 주변지역을 특성화 마을로 지정
예정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2024년 후보지 선정: 김제 공덕면 일원(지능형 농업용 로봇), 정읍 입암면 일원(첨단 바이오)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2025년 하반기 전북투자진흥지구 지정 예정
예정	문화산업진흥지구	2024년 후보지 선정: 전주(한스타일), 군산(근대문화), 익산(실감 콘텐츠), 남원(옷질공예)
예정	산림복지지구	2024년 후보지 선정: 순창 용결산
예정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2024년 선도지구 지정: 진안·장수(신광재), 무주(향로산), 임실 (옥정호), 고창(방장산), 부안(운호리)
완료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2025년 7월 군산-부안 해역 지정 완료
완료	전북 핀테크 육성지구	2025년 7월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만성지구 일대 지정 완료
일부	농생명산업지구	2024년 남원(스마트공업), 장수(저탄소한우), 순창(미생물), 익산 (동물용의약품), 진안(홍삼한방), 고창(김치특화), 임실(치즈낙농업) 2025년 6월 남원, 진안, 고창 지정 완료, 하반기 추가 지정예정
완료	새만금고용특구	2024년 새만금 고용특구(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9공구, 군산지역 지정 완료

자료: 전북경제포털 누리집 참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음

[표 3]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 2009~2025년

자치년도	국가 산업단지	유치업종
2009	대구 사이언스 파크	미래형 자동차, 첨단기계 등
	구미 하이테크밸리	전자정보기기, 신소재 등
	포항 블루밸리	기계, 철강, 선박, 자동차 등
	빛그린 산업단지	광산업, 디지털정보 가전, 자동차 등
	장항 국가생태 산업단지	생명과학, 첨단지식, 수송산업 등
2017	경남 사천진주항공 국가산업단지	항공산업, 메탈·메카닉 신공정, 바이오·케미칼 신공정 분야

사업연도	국가 산업단지	유치업종
2019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나노 관련 산업, 기타 제조업 등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탄소기계, 탄소전자, 탄소기타 제조업, R&D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섬유, 의복, 화학물질, 전자부품 등
2023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소재산업(의료, 비금속), 부품산업(금속, 전자·전기, 자동차) 등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바이오+ICT융합(의료용 물질, 정밀의료, 전자부품, 연구개발업 등)
2024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Fab 67와 37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
2025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에너지산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등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바이오 산업

자료: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참고

- 현재까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전북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대상지역에 입주한 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발생 여부 및 해당 소득금액,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 대상별 인원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 감면요건인 감면대상 업종, 감면한도 적용시 우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 및 투자 규모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입법하여 구체적인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